

추 가 약 정 서

(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)

유니온저축은행 앞

20 년 월 일

채 무 자 : _____ (인)
주 소 : _____

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(이하 “저축은행”이라 합니다.)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 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제 1 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역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에 대해 의료비,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.

제 2 조 (생활안정자금 목적) 채무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할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,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합니다.

생활안정자금 사용 목적

제 3 조 (증빙자료) 채무자는 제2조의 생활안정자금 용도 관련 증빙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 4 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)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, 제 2조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